

2016.03.07

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

1. 개정이유 및 시행일자

• 개정이유

현행 「외국환거래법」에서는 지급수단·증권을 수출입 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·증권을 수출입 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

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매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외화휴대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출입국여행자가 증가하고 있고, 대부분 외환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어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

이에 지급수단·증권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행위 중 **위반 금액이 미화 2만 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**하려는 것입니다.

• 시행일자 : 16. 6. 3.(금)

세인 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2016.03.07

주요내용

① 용어의 변경

» 제10조 : 제목 중 "확인업무"를 "확인의무"로 변경

» 제29조 제1항 제7호 :

"수입한 자"를 "수입한 자(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"로 변경

② 신설규정

» 3의2.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